

의안번호	제2674호
의 결	2023. 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김향숙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. 9. 27.

#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향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7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27.

발 의 자 : 김향숙, 우정욱, 이쌍자,  
김원순, 최두임, 허옥희,  
이정숙 의원(7인)

찬 성 자 : 정영환 의원(1인)

## 1. 제안이유

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·지원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라. 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,  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36호

- 예고기간: 2023. 9. 27.(수) ~ 2023. 10. 6.(금) [9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##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  
· 지원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 
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산물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의  
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등”이란 「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 
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.
3. “소규모 식품가공사업”이란 농업인들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  
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
를 말한다.
  - 가. 농업인들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
  - 나.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(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  
한다)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
  - 다.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
4. “사업자”란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  
서, 농산물의 생산·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유통 또는 판매(이하

“생산·판매등”이라 한다)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고성군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(이하 “식품가공사업”이라 한다)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,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·판매등을 하여야 하고,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,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하며,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 사업) 군수는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품의 제조·가공·조리·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, 기자재 등 기반조성
2.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, 포장, 컨설팅,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
3.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심의회 설치)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·조정하

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고성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.

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□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인등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

나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**

제21조(식품산업의 육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,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**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**

제2조(농업의 범위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작물재배업: 식량작물 재배업, 채소작물 재배업, 과실작물 재배업, 화훼작물 재배업, 특용작물 재배업, 약용작물 재배업, 사료작물 재배업, 풋거름작물 재배업, 버섯 재배업, 양잠업 및 종자·묘목 재배업(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)

2. 축산업: 동물(수생동물은 제외한다)의 사육업·증식업·부화업 및 종축업(種畜業)

3. 임업: 영림업(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 및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과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·운영업을 포함한다) 및 임산물 생산·채취업